|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문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답하시오.  2.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외감법’으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윤리기준’으로 표현한다.  3. 답안양식을 제시한 경우에는 답안양식에 맞게 답하시오.  4. 답의 개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개수를 초과한 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문제 1】(17점)**

다음은 공인회계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에 대한 물음이다.

**(물음 1)**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기준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1)∼(3)의 내용이 설명하는 윤리강령을 각각 쓰시오.

|  |
| --- |
| (1)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2) 공인회계사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등의 제공에 의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수임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상의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물음 2)** 다음의 각 독립적인 상황별로 나투명 회계사가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윤리강령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못할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서술하시오(단,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쓸 것).

|  |
| --- |
| (1) 나투명 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로부터 요청받은 특정업무를 본인이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업공인회계사인 이기자 회계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2) ㈜대한은 신주인수권 회계처리에 대해 감사인과 이견이 발생하여 나투명 회계사에게 제2의견을 요청하였다. 나투명 회계사는 ㈜대한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감사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와는 달리 회사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상황 | 윤리강령 | 안전장치 |
| (1) |  |  |
| (2) |  |  |

**(물음 3)** 다음의 각 독립적인 상황별로 한국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충족여부, 그리고 관련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종류를 쓰시오.

|  |
| --- |
| (1) 한국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인 나투명 회계사는 대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9천만 원을 차입한 상태에서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은행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에 대해 감사업무와 관련된 채권 5천만 원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한 채권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3)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의 신규 감사인이며, 한국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의 배우자는 ㈜대한의 재무담당이사였다가 2년 전에 퇴직하였다. 업무수행이사의 배우자는 퇴직 후 ㈜대한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4) 한국회계법인은 ㈜만세에 재무정보체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세의 지배기업인 ㈜대한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세는 ㈜대한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물음 4)** ㈜대한을 5년째 감사하고 있는 나투명 회계사는 이번 감사시즌이 끝난 후 ㈜대한의 재무담당부장으로 이직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나투명 회계사의 소속 회계법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해당 개인이 업무수행기간동안 행한 중요한 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음은 (물음 5)와 (물음 6)에 관련된 [상황]이다.**

**[상황]**

|  |
| --- |
| 한국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대한의 감사인이다. 다음은 감사현장책임자와 업무수행이사의 대화이다.  **(감사현장책임자)** ㈜대한에 대한 당기 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성 금액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의 경영진에게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영진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변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업무수행이사)** ㈜대한의 재무담당이사가 내 친구인데, 당기에 미반영한 평가손실을 내년에 인식하겠다고 하니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적정의견으로 합시다. |

**(물음 5)**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윤리기준에 따르면, 위 [상황]에서 감사현장책임자가 겪고 있는 윤리적 갈등을 어떠한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물음 6)** 위 [상황]에서는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 유착으로 인한 감사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착위협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외감법에 규정된 제도 중 위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에 언급된 제도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감사인 지정제도,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제도* |

**【문제 2】(16점)**

다음은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개념에 관한 물음이다.

**(물음 1)**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작성되며,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이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수행된다. 재무제표감사의 전제로 요구되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 중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

**(물음 2)** 감사인이 외감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된 감사기준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인은 어떤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또는 요건)를 서술하시오.

**(물음 3)**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사기준이 절대적인 수준의 확신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물음 4)** 합리적인 확신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위험’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물음 5)** 중요성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말한다. 감사과정에서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또는 시기)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

**(물음 6)** 다음은 중요성 및 감사위험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각 항목(①∼⑥)별로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 중요성 결정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재무정보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 ③ | 수행중요성을 설정하는 이유는 미발견 왜곡표시액 등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금액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
| ④ |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기업 측의 위험으로서, 재무제표감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 ⑤ |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 ⑥ | 주어진 수준의 감사위험에서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적발위험의 수준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역(-)의 관계에 있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항 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서술 |
| ① |  |  |
| ⋮ |  |  |
| ⑥ |  |  |

**【문제 3】(8점)**

다음은 ㈜대한의 감사인인 한국회계법인이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이다.

**(물음 1)** 한국회계법인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한국회계법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
| ② | 한국회계법인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회계추정치가 유의적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실증절차만 수행하였다. |
| ③ | 한국회계법인은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경영진이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

위의 각 항목(①∼③)별로 한국회계법인이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항 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서술 |
| ① |  |  |
| ② |  |  |
| ③ |  |  |

**(물음 2)** 한국회계법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다음은 한국회계법인이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감사절차이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관련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희망감정평가법인을 전문가로 활용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은 법규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에 희망감정평가법인의 업무를 언급하였다. |
| ② |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의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사랑법무법인을 전문가로 활용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은 사랑법무법인이 감사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
| ③ |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의 확정급여채무 관련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행복보험계리법인을 전문가로 활용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은 행복보험계리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평가하였다. |

위의 각 항목(①∼③)별로 한국회계법인이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항 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서술 |
| ① |  |  |
| ② |  |  |
| ③ |  |  |

**(물음 3)** 한국회계법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와 합의하여야 하는 사항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포함)* |

**【문제 4】(6점)**

한국회계법인의 그룹업무팀은 지배기업 A의 그룹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그룹업무팀의 그룹감사 관련 조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을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의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  지배기업 A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기업 A와 각 종속기업을 부문으로 식별하였다.  - 각 부문에 대한 지배기업 A의 지분율  (단위: %)   |  |  |  |  |  | | --- | --- | --- | --- | --- | | 부문 | B | C | D | E | | 지분율 | 100 | 90 | 60 | 70 |   <주요 재무정보>  (단위: 억 원)  ※ 그룹재무정보는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이며, 부문재무정보는 별도(개별)재무제표상 금액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그룹 | 부문 | | | | | | A | B | C | D | E | | 세전손익 | 100 | 15 | 110 | (-)9 | 3 | 2 | | 매출액 | 900 | 200 | 700 | 50 | 30 | 25 | | 총자산 | 2,000 | 600 | 1,400 | 100 | 40 | 30 |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이하 ‘그룹중요성’)>  1) 그룹중요성 결정시 벤치마크: 그룹세전이익  2)  그룹중요성: 5억 원(그룹세전이익 100억 원의 5%)  <유의적 부문 및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1) 유의적 부문: 부문 A, B, C  2)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부문 D, E |

**(물음 1)** 다음은 그룹업무팀이 중요성과 관련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이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그룹업무팀은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기준을 결정하였다. |
| ② | 부문 B는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문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부문 B에 대해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
| ③ | 부문 B는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문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룹업무팀은 부문 B의 부문중요성을 부문 B 세전이익(110억 원)의 5%인 5.5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

위의 각 항목(①∼③)별로 그룹업무팀이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항 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서술 |
| ① |  |  |
| ② |  |  |
| ③ |  |  |

**(물음 2)** 다음은 그룹업무팀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이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그룹업무팀은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부문 B를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였다. 그룹업무팀은 부문 B의 부문감사인에게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
| ② | 부문 C는 그룹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이 있지 않다. 다만, 그룹업무팀은 부문 C가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였다. 그룹업무팀은 부문 C의 부문감사인에게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
| ③ |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D, E)에 대해서는 부문감사인에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그룹업무팀이 그룹 수준의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였다. |

위의 각 항목(①∼③)별로 그룹업무팀이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항 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서술 |
| ① |  |  |
| ② |  |  |
| ③ |  |  |

**【문제 5】(17점)**

한국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인 나투명 회계사는 감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단, 주어진 각 상황과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  |
| --- |
| **[상황 1]** 나투명 회계사는 ㈜대한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있다. 나투명 회계사는 20x2년 1월 30일에 ㈜대한의 공장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제조설비가 전소되었다는 사실을 기말감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화재 손실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 화재 손실금액은 50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한의 경영진은 이 금액을 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은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여, 화재 발생사실과 손실금액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며 전반적이라고 판단된다.  **[상황 2]** [상황 1]과 기본적인 정보는 동일하다. 다만, ㈜대한은 화재 발생사실과 손실금액을 주석으로 적절하게 공시하였다.  **[상황 3]** 나투명 회계사는 ㈜민국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있다. 나투명 회계사는 감사절차 중의 하나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려고 하였으나, ㈜민국의 거부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다. 나투명 회계사는 ㈜민국의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재고자산 실사 입회 제한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

|  |
| --- |
| **[상황 4]** 나투명 회계사는 ㈜만세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있다. 전기 재무제표는 코리아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전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다. 나투명 회계사는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임 감사인인 코리아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 나투명 회계사는 매출채권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절차로서 당기 중의 회수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초 매출채권이 5억 원 과대계상 된 것을 확인하였다. ㈜만세는 기초 매출채권의 과대계상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동 금액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상황 5]** 나투명 회계사는 ㈜만세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있다. 나투명 회계사는 이사회의사록을 검토하던 중 ㈜만세의 경영진이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나투명 회계사는 경영진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정보의 미공개가 의도적이라 판단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영진의 거부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영향은 중요하며 전반적이라고 판단된다. |

**(물음 1)** 위의 각 상황에서 나투명 회계사는 어떤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단, 제시된 상황 외에는 모두 적정하며, 감사인이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문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할 것).

**<보기>**

|  |  |  |
| --- | --- | --- |
| 감사의견 |  |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 |
| ① 적정의견 |  | ㈎ 없음 |
| ② 한정의견 |  | ㈏ 강조사항 |
| ③ 부적정의견 |  | ㈐ 기타사항 |
| ④ 의견거절 |  |  |

**[답안양식]**

|  |  |  |
| --- | --- | --- |
| 구분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 |
| [상황 1] | ①∼④ | ㈎∼㈐ |
| [상황 2] | ①∼④ | ㈎∼㈐ |
| [상황 3] | ①∼④ | ㈎∼㈐ |
| [상황 4] | ①∼④ | ㈎∼㈐ |
| [상황 5] | ①∼④ | ㈎∼㈐ |

**(물음 2)** [상황 1]과 같이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의 미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나투명 회계사가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서술하시오.

**(물음 3)**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상황 1]과 같은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나투명 회계사가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세 가지**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기업의 최근 후속 중간재무제표가 있다면 이를 열람함* |

**(물음 4)** ㈜대한의 감사보고서일은 20x2년 2월 25일이며, 나투명 회계사가 [상황 1]에서 제시한 사건을 재무제표 발행일 전인 20x2년 3월 2일에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대한의 경영진은 화재 발생사실과 손실금액을 주석에 공시한 수정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며, 나투명 회계사는 제시된 수정재무제표에 대하여 후속사건에 대한 추가 감사절차를 20x2년 3월 15일에 종료하였다. 나투명 회계사가 추가감사절차를 ⑴ 모든 후속사건에 대해 수행한 경우와 ⑵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여 수행한 경우 감사보고서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서술하시오(단, 해당 후속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만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승인권자가 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이 법규나 재무보고체계에서 금지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

**[답안양식]**

|  |  |  |
| --- | --- | --- |
| 구분 | ⑴ 모든 후속사건에 대해 수행 | ⑵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여 수행 |
| 감사보고서일 |  | *① 방법1*  *② 방법2* |

**(물음 5)** 위 [상황 5]에서 나투명 회계사가 새롭게 알게 된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거래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해당 거래의 근거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검사하여 감사인이 평가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문제 6】(10점)**

다음은 ㈜나그네의 감사보고서 일부이다.

|  |
| --- |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나그네  주주 및 이사회 귀중  *… (중략)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0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600억 원, 당기순손실 90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000억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40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우리는 영업권 손상평가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감사절차 수행 결과 중요한 예외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경영진에게 질문 및 관찰을 통하여 현금창출단위 구분 및 영업권 등 배분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적절성 검토  - 경영진이 손상 평가에 사용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사업계획과 실제 결과의 비교  - 내부 가치평가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장 및 회사 고유의 정보를 기초로 재계산된 할인율과 경영진이 적용한 할인율의 비교  *… (이하 생략) …* |

**(물음 1)**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정한다. 감사인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를 **세 가지** 서술하시오.

**(물음 2)**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감사절차는 모두 적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위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두 가지**를 찾아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미언급* |

**(물음 3)**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은 그 특성상 핵심감사사항이다. 또한 감사기준서에 따르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중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물음 4)** ㈜나그네는 영업권의 손상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다.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인 영업권 손상평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증거로

사용할 정보가 동 외부전문가의 수행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을 고려하여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단, 위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재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평가’를 **제외**할 것).

**【문제 7】(8점)**

감사증거는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를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물음 1)**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발전하면서 ‘기업이 생산한 정보’(IP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Entity)의 신뢰성 검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매출채권연령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매출채권연령분석보고서와 같이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system-generated reports)가 대표적인 IPE이다. 감사인은 IPE를 감사증거로 사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만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 **두 가지**를서술하시오.

**(물음 2)** 나투명 회계사는 감사현장책임자로서 ㈜구룡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아래 각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다.

|  |  |
| --- | --- |
| ① | 나투명 회계사는 매출의 발생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을 추출하여 관련 증빙과 대사를 하던 계정담당회계사로부터 회사가 제공한 원천증빙의 신뢰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투명 회계사는 더 많은 감사증거의 입수, 즉 표본수를 증가시키면 감사증거의 낮은 품질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 ② | 계정담당회계사는 당기 감사 중 중요한 매출계약이 체결된 것을 발견하고, 나투명 회계사에게 동 매출계약을 외부조회절차를 통해 확인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하였다. 그러나 나투명 회계사는 외부조회가 특정 계정잔액 및 그 구성요소와 연관된 경영진주장을 다룰 때 관련성이 있으므로 계정잔액에만 국한하여 사용가능한 감사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  |  |
| --- | --- |
| ③ | 나투명 회계사는 매입채무의 과소계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투명 회계사는 후속적인 지급거래, 미지급된 송장(invoice), 매입처 계산서, 일치하지 않는 검수보고서 같은 정보를 테스트하는 것이 관련성 있는 감사증거를 얻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 ④ | ㈜구룡은 FOB선적지인도조건, FOB도착지인도조건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나투명 회계사는 수출금액에 대한 경영진주장 중 발생사실과 기간 귀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출원장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회사는 관련 증빙으로 선적서류와 송장을 제공하였다. 나투명 회계사는 이 증빙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경영진주장 모두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감사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
| ⑤ | 나투명 회계사는 적극적 조회를 통해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나투명 회계사는 조회처가 해당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조회에 회신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조회서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공란 형태의 조회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투명 회계사는 이러한 공란 형태의 조회가 조회처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신율이 더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위의 밑줄 친 각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상 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서술 |
| ① |  |  |
| ⋮ |  |  |
| ⑤ |  |  |

**【문제 8】(18점)**

한국회계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x1년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발생으로 인하여 영업 및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각 물음에서는 한국회계법인이 ㈜대한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면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각 물음의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다.

**(물음 1)** ㈜대한은 코스닥상장 추진을 목표로 20x1년 6월 30일 기준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회계법인은 매출채권 조회를 수행하면서 ㈜대한의 해외거래처 ABC의 회계담당자가 회신한 조회서 금액과 회사제시 금액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한의 재무담당이사는 거래처 ABC의 회계담당자가 COVID-19 확진판정으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대한의 재무담당이사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한국회계법인이 발견한 조회서 회신금액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자 감사업무를 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업무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것을 한국회계법인에 요청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이 감사업무 계약조건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대한의 재무담당이사가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물음 2)** ㈜대한의 주주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요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이다. 한국회계법인은 감사계획 단계에서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성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였다.

(1) 중요성 결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문서화할 사항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

(2) 하반기 중 제품 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하여 ㈜대한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이 전기와 대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대한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의 감소가 COVID-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예외사항이므로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국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단계에서 사용한 연간 재무결과의 예측치와 실제 재무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중요성 결정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중요성 결정방법과 결정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중요성 결정방법 |  |
| 중요성 결정근거 |  |

**(물음 3)**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에 대한 현장감사 수행 중 해외거래처 ABC에 매출채권조회서를 발송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대한의 담당자로부터 해당 국가의 확진자 증가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라 ABC의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우편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1) 한국회계법인의 매출채권 계정담당자는 ABC의 회계담당자 전자메일 주소를 수령하여 본인의 전자메일로 거래처 ABC의 담당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회신받아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금액이 일치하므로 추가 감사절차는 수행하지 않았다. 업무수행이사는 감사 진행상황을 검토한 후, 전자메일로 수령한 감사증거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조회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의 매출채권 계정담당자가 업무수행이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감사절차를 서술하시오.

(2) 감사인은 거래처 ABC가 소재한 해당 국가의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어 사업장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채권조회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감사완료시점까지 미회수되고 있다. 감사인은 조회서 회신을 독촉하는 대신 매출채권 잔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출채권 계정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적 감사절차를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보고기간 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

**(물음 4)** ㈜대한의 재고자산은 총자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은 방역 조치에 따른 공장출입 제한으로 재무제표일(20x1년 12월 31일)에 예정된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한국회계법인도 재고자산 실사 입회를 수행할 수 없었다. 회사는 20x2년 1월 15일에 재고자산을 실사하였고, 한국회계법인도 동 일자에 재고자산 실사 입회를 수행하였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1) 재고자산 실사 입회가 재무제표일이 아닌 일자에 수행될 경우 재고자산의 실사일과 최종 재고자산 기록일 사이의 금액변동이 적절히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감사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 설계 시 고려사항 중 가장 **관련없는** 것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 |
| 번호 | 감사절차 설계 시 고려사항 |
| ① | 재고자산의 실사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
| ② |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기록이 바르게 조정되는지 여부 |
| ③ | 기업의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기록의 신뢰성 |
| ④ | 실사 중 입수된 정보와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기록간의 유의적 차이에 대한 내용 |

**[답안양식]**

|  |  |
| --- | --- |
| 번호 | 선택 이유 |
|  |  |

(2) 한국회계법인은 20x2년 1월 15일에 실시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면서 중요한 수준의 재고자산이 방역지침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외부창고에 보관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대한의 재고담당자는 외부창고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재무제표일자의 창고보관증을 한국회계법인의 재고자산 계정담당자에게 제시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의 재고자산 계정담당자는 재무제표일자의 재고자산수불부와 창고보관증을 대조한 결과 수량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업무수행이사는 감사 진행상황을 검토한 후 창고보관증보다 더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의 재고자산 계정담당자가 업무수행이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감사절차를 서술하시오(단, 창고보관증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제외할 것).

**(물음 5)** ㈜대한은 COVID-19 상황이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무제표에 주석 기재하였다. 한국회계법인은 ㈜대한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 단계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의 주석 기재로 인하여 한국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추가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문단의 종류 및 선택한 근거를 서술하시오(단, 선택한 근거는 (물음 5)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서술할 것).

**[답안양식]**

|  |  |
| --- | --- |
| 추가 문단의 종류 |  |
| 추가 문단을 선택한 근거 |  |

**- 끝 -**

여 백

여 백